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1 인지세 안내

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며, 계약을 할 때 **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한 후**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 추후 근린생활시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필요한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2 납부 대상 및 납부기간·방법

※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

구분	내용
납부 대상	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납부 기한 방법	계약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계약서별로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인지세를 납부
전자수입인지 구입처	전자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3 납부 세액

과세문서	세액	수입인지가격
부동산, 선박, 항공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	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	15만원
	기재금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	35만원

4 온라인 신청 방법

1 해당 홈페이지 접속 → 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

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



3



4 전자수입인지 출력



5 오프라인 신청 방법

1 우체국 또는 은행 방문(방문 전 해당처 확인 요망)

2 전자수입인지 구매 신청서 작성

3 전자수입인지 발급